

去來基本契約書

09년 03월 24일

회사명 : (주)아이피에스
CODE : DTV

6조 4항 추가 (법정신설)

수급사업자 (주)아이피에스 (이하 "을"이라 칭함)와 원사업자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간에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존공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 적)

"갑"과 "을"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급기업의 안정된 생산 활동과 하도급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2조 (위탁내용)

- 제조 위탁물품(또는 "주문품"이라 칭함)에 대한 발주량 및 납기는 "갑"이 발급한 주문서에 기재되며 모든 주문서(간판, 납품지시서 등 포함)는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되 주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래기본 계약서에 의하며, 주문서에서 정한 사항과 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갑"은 "을"이 위탁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위탁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별 수급 LEAD TIME을 감안한 주문 계획을 "을"에게 예시하도록 한다. 단, 예시는 주문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갑"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갑"이 제시한 예시물량에 대해서 "을"이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물량 예시내용을 접수 즉시 납품불가 사유서를 "갑"에게 제출한 후 상호 협의하에 대책을 강구하여 납품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 (관계자료의 제출)

- "을"은 "갑"과의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현황표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자료
- "을"은 전항의 제출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부품개발 및 국산화

제4조 (부품개발)

- "을"은 "갑"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종의 업체인 경우 "갑"은 "을"에게 부품개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을"이 부품개발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을"은 "갑"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양산시 예상되는 품질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하여야 한다.
- 부품개발에 따른 개발비, 시사출비, 금형 수리비 등 개발에 관련된 비용은 개발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5조 (부품의 국산화)

"을"이 부품을 국산화할 경우 개발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를 검토한 후 "을"과 협의하에 개발 계획을 확정하며, "을"과 개발착수 이전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개발비용분담, 기술 및 자금지원,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개발일정, 품질수준, 물량보장, 가격결정 범위 등)에 대해 개발에 따른 분업적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국산화 개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 절 납 품

제6조 (단가 결정)

1. 내수용 제조 위탁물품

- 제조 위탁물품의 단가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하고 주문서상에 기재토록 한다.
- 단가의 결정은 양산 시점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양산시점 이전까지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예상단가를 결정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단가가 확정되면 예상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기 물품대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이자는 "갑"과 "을" 상호 계산하지 않는다.

2. 수출용 제조위탁 물품

- 수출용 제조 위탁물품의 단가결정 및 시기는 내수용 제조위탁 물품의 경우와 동

일하다.

② 주문서상에 표기되는 화폐단위는 최초 단가 결정시 "갑"과 "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며, 단위가 외국화폐일 경우 적용환율은 해당 물품의 단가를 결정한 당월의 거래은행 제1영업일 전신환매입률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③ "갑" 또는 "을"이 환율변동에 따라 각각의 유리한 기준으로 화폐 단위를 상호 합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단가변동

원자재가격, 환율의 변동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원가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격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호 협의 및 합의를 거쳐야 한다.

4. 단가조정

"을"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인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원재료(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거쳐 제품이 되는 기본소재를 말한다) 가격이 20% 이상 변동되어 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호의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호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납기)

납기는 주문서(간판, 납품지시서 등 포함)상에 기재된 물품 및 수량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양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말한다.

제8조 (납기의 준수)

1. "을"은 납기지연, 수량부족 등 이상 납품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과 협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한편, "갑"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만일 "을"의 귀책 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지연된 경우 "갑"은 "을"에게 납기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자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체상금의 금액 및 지급방법, 시기 등은 주문서 또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갑"과 "을"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납품방법)

- "을"은 "갑"의 제조 위탁물품에 대하여 "갑"의 주문서 상에 기재된 물품 및 수량을 지정된 납기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납품 절차는 "갑"의 기준에 따른다.
- "갑"은 "을"로부터 제조 위탁물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물품의 검사 여부에 불구하고 "을"에게 즉시 보관증(물품수령증)을 교부한다.
- 제조 위탁물의 납품과 관련하여 "을"은 제조 위탁물의 운반에 통상 이용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용기제작 비용을 "을"이 부담도록 한다. 특별히 "갑"이 지정하는 특수용기(자동화 LINE 전용 등)를 사용하여 납품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하도록 한다.

제10조 (검사 방법 및 시기)

1. 검사방법

- 제조 위탁물의 검사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실시하며, "을"은 자재납품시 "갑"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의해 실시된 자체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 "갑"은 "을"의 품질실적과 제조 위탁물의 특성에 따라 관리검사(무검사), SAMPLING검사, 전수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갑"은 제조 위탁물의 일부를 검사전이라도 "을"의 동의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한 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갑"에게 있다.

- 검사의 시기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3일이내 검사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 납품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그 검사 시기에 대하여는 제조 위탁물의 특성상 검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불합격품의 처리)

- "갑"의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인수하고, "갑"이 요구하는 지정 납기일까지 이의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책임을 면

하지 못한다.

2.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인수하여야한다.
"을"이 이에 위반한 경우 "갑"은 이 불합격품을 "을"에게 반송 할 수있으며, 반송
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이 불합격품을 보관하는 동안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합격품의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한 경우 그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재검사)

1. "을"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주문품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판단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정하는 것
으로 한다.
2. 전항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검사상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경우가 아니
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부족수량 및 불량대품의 납입과 과다납품의 처리)

1. "을"은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하자로 인한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그
부족수량을 보충하거나 하자있는 불합격품의 대체품을 "갑"에게 납품하여야한다.
단, "갑"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갑"은 제조 위탁물품의 과다납품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11조 불합격품의 처리와동일
하게 처리키로 한다.

제14조 (서비스 자재의 공급)

1. "을"은 "갑"의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법적 의무 공
급기간까지 서비스 자재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 자재의 단가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이 공급한 자재 중에서 정부가 정한 제품 무상 보증 기간이내에 불량을 유발시
킨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보상(물품교체, 현금 등)해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자재의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절 지 불

제15조 (대금지급)

1. 내수용 물품대 지급

① 납품된 물품대금의 지급은 "갑"과 "을"의 수령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매월 2회 집계(이하 "자재입고 마감일"이라 칭함)하며

② 대금의 지급은 "을"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중소기업인 경우 "갑"은 전 1항에서 정한 "갑"의 자재입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으로 지급토록 하고, "을"이 대기업일 경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어음으로 지급한다.

2. 수출용 물품대 지급

① 납품된 물품대금은 "갑"과 "을"의 수령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매월 2회 집계하여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이 주문서 발급이후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을 개설할 수 있도록 매도계약서(OFFER SHEET)를 "갑"의 제조 위탁일로부터 7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주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④ "갑"은 물품 수령후("갑"의 자재입고 마감일)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을 "을"에게 교부하고, "갑"이 L/C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을"이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관세 환급금의 지급)

1. "을"은 제조 위탁물품 인도일(자재입고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전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은 접수한 서류의 하자가 없는 한 제조 위탁물품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세환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은 "을"이 법으로 정한 중소기업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을"이 대기업인 경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지급 조건에 따른다.

제17조 (물품대금의 상계)

1. "갑"은 유상으로 지급한 자재의 대금 또는 기타 "을"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 공제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도 상계할 수 있다.

1. 보증의무

- ① "을"은 위탁받은 제조 위탁물에 대하여 제조 공정에서부터 완료후 납품시점까지 "갑"이 요구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계획의수립, 측정체계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문제 개선대책 수립 및 현장 FEED BACK 등 품질보증 활동을 해야 한다.
- ③ "을"은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제조공정 전반(사양서, 도면관리, 재료구입, 가공, 조립검사, 포장출하, 보관 등)에 걸쳐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류를 제작, 유지 관리한다.
- ④ "을"은 제조위탁물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지 못해 "갑"의 제조 위탁물품에 대한 품질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을것으로 판단될 경우 "갑"은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해 "갑"이 취하는 모든 적법한 제재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도면, 사양서 등의 관리

-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제조 위탁물품에 대한 대여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1) 제조위탁물의 부품 규격, 도면
 - (2) 제조위탁물의 검사를 위한 "갑"의 수입검사 기준서
-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는 대여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 임대,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못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서류를 임의로 멸실 · 훼손하거나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계약의 해지, 이행의 완료 또는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서류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공정변경의 사전신고 및 승인

"을"은 "갑"의 제조 위탁물을 제조함에 있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공정, 제조설비, 사용재료, 시험규격 및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갑"이 정한 양식에 준하여 신고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단,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발생한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 제조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 후 3년 이내에 "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또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을"은 제조 위탁물품의 하자가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항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전 1항의 경우 "을"은 제조 위탁물품을 수리하여 주거나 하자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 이외에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도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
- 전 1항 또는 3항에 대한 "을"의 책임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제20조 (품질손실 비용의 보상)

"을"이 "갑"에게 납입한 부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갑"의 공정 및 시장에서 불량발생 규모가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품질 및 제품 책임에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을"은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계약서"에 의거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 (제조물 책임)

-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 "을"이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하여 "갑"에게 제3자로부터 제조물 책임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동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갑"을 방어하여야 한다.
- "갑"은 자기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위 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배상을 한 경우에는 "을"은 동 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 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 6 절 경영 합리화

제22조 (경쟁력 향상 및 경영합리화)

- "을"은 생산성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 생산공정의 개선 및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을"의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을"로부터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도 및 진단요청이 있을 경우

② "을"의 경영상태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전 2항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 부터 진단 요청이 있거나 진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2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갑"은 "을"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합리화 추진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결산보고 등), 생산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진단 결과 "갑"은 "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을 "을"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 (개선제안)

1. "을"은 제조 위탁물에 관한 설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채택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을"의 제안을 채택 적용함에 따라 유, 무형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의 배분, 적용 범위, 적용 기간은 "갑"의 「협력회사 제안제도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지도 및 협력)

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제조공법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대상 업체는 "을"의 요청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호 동의 하에 "갑"의 인력을 "을"에게 파견할 수 있다.
3.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을"은 파견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을"의 직원에 준한 지원을 실시한다.
4. "을"은 "갑"이 파견한 인력이 지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 및 개선토록하여야 한다.

제 7 절 지급 및 대여

제25조 (자재의 지급)

1. "갑"은 필요에 따라 개별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질 물품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칭함)의 품명, 수량, 인도일, 인도

장소, 인도조건, 대금산정, 결제일, 결제방법 등은 "갑"과 "을"간의 사전 합의에 따른다.

2. "을"은 지급품의 인도를 받은 경우 자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지급품에 수량 과부족 또는 불합격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의 조치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3. "을"은 무상지급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보수, 대체품 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갑"은 무상지급품에 대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입회하에 "을"의 사업장을 방문, 점검할 수 있다.
5. 지급된 자재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정산을 실시하며, 생산이중단된 자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지급품의 과부족을 파악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상호의 과실을 규명하여 자재반납 또는 전용, 현금배상등을 통하여 정리토록 한다.
6. "을"은 "갑"의 지급품중 무상지급한 재료 등의 가공시 불량률이 허용치를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지급재료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용불량과 변제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품목별 재료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설비 대여)

1.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제조 위탁물품에 대한 "을"의 제조 공정상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에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대여설비 등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을"고유의 소유물과 구분하기 위한 필요한(명인) 방법에 의한 식별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 물품관리 장부에도 "갑"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2. "을"은 대여설비 등에 대하여 "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가입 또는 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가입 또는 담보설정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3. 설비 대여기간은 대여시점부터 1년간으로 하되, "갑"과 "을" 상호간 협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갑"은 대여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을"은 임차한 설비 등에 대하여 항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금형 제작 및 상각)

1. 제조 위탁물품의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금형은 "갑"의 비용 부담으로 제조위탁이 전까지 제작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을"의 비용부담으로 제작

한 경우 그 실제작비는 "갑"이 동금액을 생산예정 제조 위탁물품수량으로 분할하여 단가에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하고 금형비계산 및 상각수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상각이 완료된 금형은 "갑"의 소유로 되며, 미상각 된 금형이라도 "갑"이 미상각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갑"의 소유로 할 수있으며, 미상각 금액지불 이후의 목적물 단가는 그것에 포함된 금형비만큼인하 조절되는 것으로 한다.
3. 상각금형에 있어서 "갑"이 금형제작비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그 금형은 "갑", "을"이 공유로 하며 각자의 지분은 금형비의 부담분으로 하고 사용권은 "갑"이 갖기로 하며, 금형비의 전액이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계약 기간에 한하여 소유권은 "을"이, 사용권은 "갑"이 갖는 것으로 한다.
4. "갑"은 제조 위탁물품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치공구 및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을"에게 대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대가 등 대여(매각) 조건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소유권)

1. 지급품 또는 대여품과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근거로 제조 가공되어진 사양품, 또는 기타 물건의 소유권은 "을"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 가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나 기타 일반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품 및 대여품이 "갑"의 소유임을 밝혀서 해당 강제집행 등의 목적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1.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갑"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① 대여품 또는 무상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② 특별히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대여기간이 완료된 경우

제 8 절 일반사항

제30조 (이행의무)

- "을"은 "갑"의 제조 위탁물품에 대해 직접 작업을 해야 함이 원칙이나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제조 위탁물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외주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갑"은 "을"의 재외주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상기 1항의 경우,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을"의 의무를 제3자에게 준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갑"에 대한 계약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단, "갑"이 재외주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잘못으로 인해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갑"은 "을"의 재외주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을"은 재외주 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상태 및 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 "갑"에게 알려야 하며, "갑"은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 (2차 VENDOR에 대한 대금지급)

- "을"은 "갑"의 제조 위탁물품 가공, 조립 등을 위해 "을"의 수급사업자(이하 "2차 VENDOR"라 칭함)로부터 "갑"의 제조 위탁물품 일부를 제조 위탁할 경우 "을"은 정기적으로 2차 VENDOR에 대한 제반 현황을 관리 해야 하며 "갑"이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전 항의 2차 VENDOR가 중소기업인 경우 납품된 물품대금의 지급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그에 준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32조 (권리의 양도)

"갑" 및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본 기본계약 또는 이에 의거한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 (기밀유지)

-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를 통해 지득한 일방의 기밀(도면, 사양, 자

료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 내용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며, 사전 서면에 의해 상대방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상태에서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갑"의 제조 위탁물품에 대한 제조가 행하여지는 "을"의 공정에 대해서는 제3자의 출입은 "갑"과 "을"이 상호 동의를 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3. "갑" 및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이후 3년까지상기 1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항의 규정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1.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시된 정보(사양서, 도면, 시험 DATA, IDEA, 사용방법, 부품 등)에 기초하여 "을"이 발명, 고안을 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지적재산권"이라 칭함)을 출원 또는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을"은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귀속 및 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지적재산권의 침해)

1.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조, 가공, 수리한 제조 위탁물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자기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배상금 및 업무처리비용 등)을 해야 한다.
3. "갑"과 "을" 각각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전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조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36조 (제3자의 손해)

1. "을"은 그가 제조, 가공, 수리한 제조 위탁물품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자기책임과 비용 부담하에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해야 한다.
2. 제조 위탁물품에 대한 "을"의 귀책사유로 사외 CLAIM 및 서비스 CLAIM이 있는 경우 이들 CLAIM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부정방지의 의무)

1.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하여 불건전한 상거래 행위(금전수수, 리베이트, 커미션수수 등) 또는 통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갑"과 "을"의 종업원중에서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에 역행되는 행위를 한자는 "갑"과 "을" 어느쪽에서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8조 (계약의 해제 · 해지)

1. "갑" 또는 "을"은 어느 일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별도의 최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③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을"이 파산 또는 회사의 정리 절차를 법원에 개시 신청한 경우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제37조에 준하는 불건전한 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을"이 제조한 위탁물의 품질, 납기가 "갑"의 사양서 기준에 미달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기타 "을"이 약정 내용의 이행거부를 직·간접으로 표시한 경우
 - ⑤ 협력회사 실태조사 또는 정기평가 결과 불량업체로 판단될 경우
3. 상기 1항의 사유 이외에 "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사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약해지시 준수사항)

1. "을"은 전 조의 계약의 해제, 해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갑"으로부터제조, 가공, 수리위탁 받은 납기전의 제조 위탁물품(작업중인 것도 포함됨,이하 같은

뜻임)에 대해 "갑"의 납품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갑"은 전 항에 따라 납품 받은 납기전의 제조 위탁물품을 직접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을"소유의 재료, 기기, 도면, 기공구 등을 "을"로부터양수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3. 전항에 관한 상세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손해배상 청구권)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에게 제38조 또는 39조에 정한 계약해제, 해지로 인하여손해가 발생한 때

제41조 (합의관할)

이 기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2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 년 03 월 25 일부터 2010 년 3 월 24 일까지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도동일하다.
2. "갑" 또는 "을"의 대표자,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이 변경사항에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본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 (계약내용의 수정 및 변경)

이 계약은 "갑",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 (협의해결)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 · 상법에 의하며,민 · 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 것 외에는"갑", "을"이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구계약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갑"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회사명 :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윤우

계약번호 : ESCT200903252576

서명일 : 2009.03.25 15.10.06

"을" 주소 : 경기 평택시 지제동 33

회사명 : (주)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문상영

계약번호 : ESCT200903252576

서명일 : 2009.03.25 16.12.12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誓約書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 정착이 상호 경쟁력 제고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삼성전자(주)의 윤리강령 선포에 동참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 우리는 사회적 소명의식을 갖고 부정행위 근절에 솔선수범하며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 관행 준수만이 상생경영의 첨경임을 명심하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삼성전자(주)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삼성전자(주)와 거래함에 있어 어떠한 음성거래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하지도 아니하며 일체의 부정, 부당행위를 제의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상기 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9년 03월 25일

회사명 : (주)아이피에스

대표자 : 문상영 (인)

계약번호 : ESCT200903252576

계약일 : 2009.03.25 16.12.12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品質保證契約書 (Quality Assurance Agreement)

회사명 : (주)아이피에스

CODE : D7TV

[협력회사 : (주)아이피에스]
(Supplier)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아이피에스(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계약서를 체결하고 "갑"의 입장에서 "을"은 성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이행한다.

All aspects of this quality Assurance agreement apply to SAMSUNG ELECTRONICS CO., LTD. (hereafter referred to as Samsung) and (주)아이피에스 ENG (hereafter referred to as Supplier)

And both shall sincerely to fulfill the Articles prescribed as follows:

"갑"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회사명 :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윤우
계약번호 : ESCT200903252576
서명일 : 2009.03.25 15.10.06

"을" 주 소 : 경기 평택시 지제동 33
회사명 : (주)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문상영
계약번호 : ESCT200903252576
서명일 : 2009.03.25 16.12.12

제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본 품질보증계약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갑"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이 행하여야 하는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achieve quality assurance target for the product supplied by Supplier to Samsung ("Product") by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Supplier.

제2조 거래 기본계약서와 품질보증 계약서와의 관계

Article 2. Relation between Basic Agreement and Quality Assurance Agreement

본 계약서는 "갑"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보증상의 "갑"과 "을"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본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은 "갑"과 "을"간에 체결한 거래기본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This Agreement shall be applied to responsibilities on quality assurance that is needed to meet the quality level of the Product. If there is no provision to apply in this Contract, the "Basic Agreement" made between Samsung and Supplier shall be

applied.

제3조 적용범위 / 계약유효

Article 3. Scope and Validity Period

1. 적용범위(Scope) "을"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This Agreement applies to quality assurance of supplier's product for Samsung.

2. 계약 유효(Validity)

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개정 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체결 후 1년간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조건으로 매년 재 계약 된 것으로 본다.

3) "갑"과 "을"은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No change in, addition to, or waiver of any of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nless approved by the parties hereto in writing.

2)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or one year from the signing date. Thereafter, this Agreemen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ccessive period(s) of one (1) year each at the same conditions, unless modified or terminated by either party in writing at least one (1) month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term or any renewal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have caused their respective representatives, each duly authorized, to execute duplicate originals of this Agreement and retain one respectively.

제4조 공장조서의 제출

Article 4. Submitting Factory Record

"갑"은 "을"에 대해 제품에 관계되는 공장조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구 일까지 "갑"이 제시한 기재 예를 참고로 작성하고 제출한다. 공장조서의 개요는 하기와 같이 하지만, "갑"이 제출 요구시에 제시하는 기재 예와 다를 경우는 "갑"이 제시하는 기재 예를 우선으로 한다. 단, "을"이 유사한 서류가 있는 경우는 그 서류로써 대용 가능하다.

[공장조서의 개요]

- 회사 및 해당 물품 제조 공장의 개요
- 해당 물품(구입사양번호, 품명 등)
- 해당 물품의 조립공정개요 및 주요부품의 구입선
- 조직(전사 및 해당 물품제조공장의 조직도 등)
- 품질에 대한 회의
- 교육, 훈련
- 품질보증활동(품질방침, 품질목표치관리, 전사적인 품질개선활동사례 등)
- 설계의 관리(설계~양산까지의 Flow)
- 표준류의 정비(규격, 기준서)
- 계량/계측기, 설비의 관리
- 거래선 관리
- 공정의 관리(제품 및 공정규칙의 문서관리, 통계적 기법 활용, 변경점 관리, 불량 개선활동 등)
- 검사/시험의 관리(검사표준, 제품의 출하 보증 체제 등)
- Claim처리(공정내 및 Field 불량의 처리 Rule 등)
- 수리 대응

Samsung shall have the right to audit Supplier's products process and quality system at anytime with consent from Supplier in advance. Samsung can ask Supplier to submit the factory record related to the product before purchasing. Supplier shall provide to Samsung upon request the following documents referred to the products within due date. The overview of a factory record is shown below. If Samsung requires description items other than those listed below when requesting the factory record, the description items presented by Samsung shall override. If Supplier has similar document, Supplier can submit such documents as an alternative within Samsung's approval.

[Overview of factory record]

- Outline of company and the pertinent production factory
- Pertinent product (Part number of procurement, Component Description., etc)
- Process flow from stocks, production, test to shipping zone.
- Organization (system structures of company, the pertinent production factory, etc)
- Quality Meeting for Quality Improvement
- Education and training
-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quality strategy, quality target value control,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etc.)
- Design control (process flow from design step to mass production)
- Documentation Control (Standard, Management of specifications)
- Equipment control (Gauge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Calibration)
- 2nd Vendor control
- Process control
 - Specification documents control of the product and Process
 -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Activities
 - Production Yield data and Implement corrective action for the failures
 - ECN/PCN (Engineering Change Notice/Process Change Notice) Control

13. Product Inspection and Reliability Assurance system (Test Criteria, OBA (Out of Box Audit)System, ORT (On Going Reliability Test)) System
14. Standards for responding to complaints (Handling Process of returning material (RMA) from both field and production line, Reimbursement Rule)
15. Repair handling

제5조 제품의 생산조건의 관리

Article 5. Production Condition Control

1. 변경점 관리(Engineering /Process Change Procedure)"을"은 "갑"과 제품 승인후 구입 개시부터 6개월 간은 생산조건의 변경을 실시하지 않는다. 변경점은 제품의 Hardware 및 품질 시스템의 Software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은 제품의 신뢰성, 수명, 호환성 관련, 포장사양, 기구물 사양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공정변경, 업체변경, 설계변경, 부품변경 및 생산지변경 등 의 중요한 변경점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변경점을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은 중요한 변경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에 승인을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실시해야 한다.

Supplier shall not change production conditions within 6 months from purchasing after approval. The changing is limited in not only hardware of product but also software as management condition. If there is a special reason for changing, Supplier shall indicate to Samsung any major change which includes all process changes, sourcing changes, design changes, component stepping changes, geographical relocation of manufacturing site, drawing changes or process step discontinuance that affect the agreed specifications, the mechanical form or fit, the packaging, the environmental compatibility, the life, the reliability or the quality of products. Supplier shall obtain Samsung approval before implementing any major change by submission of ECN format. Minor changes do not need Samsung approval, but Supplier shall notify Samsung of the change.

2. 변경점 신청의무(Obligation to report production condition alterations)

"을"은 생산조건의 변경을 행할 경우는 변경 완료일의 60일전까지의 협력회사 평가DATA 등을 첨부하여 사전에 신청한다. "갑"은 "을"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단체평가 또는 DATA평가로 채용 가부를 결정하고, 2주이내에 결과(중간결과라도 가능)를 통지한다.

When making production condition alterations, Supplier shall submit an applic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Supplier's evaluation data by the date (60) days prior to the planned alteration date.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from Supplier, Samsung shall determine whether to allow the alteration through single evaluation or data evaluation and shall report the results to Supplier within two weeks (preliminary notification before completion of evaluation is acceptable).

3. 변경점 규칙 미준수(Penalty for Disobedience of ECN rule)

"을"은 "갑"에 무단으로 변경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품질문제가 "갑"의 공정내 또는 고객 선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해결에 대한 제비용을 배상한다. 단, 구체적인 배상액은 양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When Supplier has made any changes without prior approval from Samsung and it leads to failure at both Samsung production or the field, Samsung shall claim payment , replacement or screening to Supplier .The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by negotiation between Samsung and Supplier .

제6조 2차 VENDOR 관리

Article 6. The Second VENDOR Management

1. "을"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 가공, 수리를 제3자(이하 "2차 VENDOR"라 함)에게 위탁한 경우, 명확한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위탁 내용의 현황 및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2. "을"이 2차 VENDOR를 선정 또는 변경 시에는 변경점 신고서 양식에 준하여 "갑"에게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갑"의 2차 VENDOR로부터 제조, 가공되어 납입되는 품목은 Lot를 구성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및 2차 VENDOR의 품질개선 활동시 활용한다.
1. If Supplier consigns manufacturing, processing, repairing for a part or all of Materials to the third party (hereafter called "the second vendor of Samsung"), Supplier should select the second vendor according to the definite selection criteria and control the consigned description and the production process periodically.
 2. If Supplier selects or changes the second vendor, supplier should give the prior notice to Samsung pursuant to ECN report form and obtain the approval from Samsung.
 3. Supplier should implement the incoming inspection by making Lot for items supplied from the second vendor through producing, processing. The result of inspection shall be recorded and used in the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of second vendor.

제7조 제조 공정 관리

Article 7. Manufacturing Process Control

1. "을"은 "갑"에 공급하는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량에 대한 분석 및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일별, 월별, Line별, 제품별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개선 활동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정을 개선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개선활동을 하여야 하며 개선활동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및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시 개선활동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 진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재작업, 전수 검사한 Lot 또는 중요 변경사항이 적용된 Lot에 대해서는 기존양산과 구분 되도록 별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변경점 신고서 양식에 준하여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조공정의 관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중요 품질 특성 항목에 대하여 월별

"월간 품질 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공정자료
 - 2) 불량률, 불량 Pareto chart, 중요 불량(worst 3)의 개선 대책
 - 3)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자료
 - 4) 출하검사 결과(Out of Box Audit)
 - 5) 신뢰성 결과(On going Reliability Test)
5. "을"은 "갑"의 공정 및 시장으로부터 반품된 불량에 대해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원인 및 대책을 제출 하여야 한다.

Supplier should perform analysis on failures that occurred in manufacturing process for materialssupplied to Samsung and implement the corrective action. The document shall be recorded by date, month, Line, product and used in the improvement activity. Supplier should constitute the organization for processing improvement and audit the improvement activity status periodically. The result of improvement activity shall be reported to general manager and managed. Also, Supplier shall send the status of improvement activity and be audited by Samsung. Supplier should mark for reworked or screened lot in to identify from normal lot and immediately notify it to Samsung pursuant to ECN form In order to assure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are under control and the products quality is monitored, Supplier should send monthly to Samsung a Monthly Quality Report specific to each product which will include:

- 1) Factory Performance (Monthly Base)
- 2) Defect Rate, Failure Pareto, Corrective action for worst 3 Item
- 3)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data
- 4) Out of Box Audit (OBA)
- 5) On going Reliability Test (ORT) report

Supplier should provide a root cause and corrective action plan for each failure returned from Samsung manufacturing sites and customers within 7days after Supplier receive information.

제8조 초물 관리

Article 8. Control about the First Product

1. 초물은 신규품, 설계변경품(재질변경을 포함), 2차 외주처 변경품, 제조장소의 변경, 제조방법 변경 품, 기타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변경에 대한 최초 제조품을 말한다.
2. "을"은 변경점신고에 대한 "갑"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내부 검증 또는 시험 등을 실시하고 초물 납품시 그 결과에 대한 Report 및 선적 일정을 갑에 제출하며(7일 이전) 제품포장 Box에는 초물 Label 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3. "을"은 2번항에 근거해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에 착수한다.

1. First product is defined as the change of product which can affect on new model, design-changed

product (including the materials change), change of second vendor, change of production place, change of production process, whose change can affect on other quality.

2. Supplier shall perform the internal audit or inspection after prior approval of Samsung and when supply the first product the result report and the shipment schedule shall be presented to Samsung (Before 7 days) and the Label (First product) should be attached on product package box pursuant
3. Supplier shall begin the production after approval of Samsung, pursuant to No.2

제9조 신뢰성 시험 관리

Article 9. Control about Reliability Test

1. "을"은 신뢰성 시험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설비를 구비하여 정기적인 시험계획에의거 시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일반 공정의 경우 최소 분기별로 제출해야 되며 단, 변경점 발생시에는 모두 제출 되어야 한다.)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체 신뢰성 시험이 불가시 "갑" 및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Supplier should practice a test according to periodic test plans after possess the organization and machinery for accomplishing the reliability test. Supplier should submit the results to Samsung periodically. (Minimum requirement in normal state process is once per quarter, but all activity is following in case change occurs)
2. Supplier should implement a test using Samsung's facility or an authorized third organization in case Supplier cannot practice the reliability test.

제10조 품질사고 발생시 손실비용 처리

Article 10. Handling about the loss cost when the quality problem is occurred

1. "을"은 "갑"에게 공급한 목적물이 "을"의 귀책으로 인해 "갑"의 공정 및 시장에서 품질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Supplier bears all responsibilities about the quality problem in Samsung process and field due to supplier fault. In case Samsung sustains a loss, Supplier should compensate Samsung for the loss.

2. 배상은 월 또는 분기별로 집행되며 "을"은 해당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갑"은 특정 분기 중에는 이러한 배상금액 청구를 Waiver(불이행)할 수 있으며 이 Waiver는 해당 분기에만 적용 한다.

The Reimbursement Amount, if any, shall be calculated on a monthly/quarterly basis and Supplier Shall pay these costs to Samsung within ten (10) days from the end of the month/quarter.

Samsung, at its sole option and discretion, may waive such reimbursement costs for a particular quarter. Any such waiver shall be for that quarter only and shall not apply to any additional quarters.

3. 공정불량률(LRR) 목표에 따른 손실비용청구는 "갑"의 사업부 주관으로 "을"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정불량률(LRR)이 부속서 1에 명시된 목표를 30일 이상 초과시 LRR DPPM이 초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그 원인파악 및 개선대책을 취해야 한다. 명시된 기간 내에 LRR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문제는 "을"의 최고 경영진까지 48시간 이내로 통보한다.

Reimbursement loss costs to target of the LRR rates can be executed by Samsung GB after Samsung and supplier mutual agreement. If LRR rates exceed any of the LRR rates set forth in Appendix 1 for any thirty (30) day period.

Supplier shall immediately provide all necessary resources to identify and implement corrective action no later tha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the LRR DPPM rate was exceeded. If the LRR DPPM rates are not reduced to acceptable rates within the required period, the problem shall be escalated to officers of each party at the Vice President level or above within forty-eight (48) hours.

4. 품질사고의 손실비용 보상은 "갑"이 귀책 책임, 손실비용 보상한도, 손실비용 보상방법 등을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속서 1』에 준한다.

About compensation of a loss cost caused by the quality problem, Samsung and Supplier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compensation limits about loss cost, compensation method about loss cost. * According to 『APPENDIX 1』

◆ 품질사고

- A. "을"의 목적물의 귀책으로 인하여 "갑"의 검사결과(수입검사,제품검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 B. "을"의 목적물의 귀책으로 인해 "갑"의 공정에 LINE-STOP 이 발생한 경우.
- C. "을"의 목적물의 귀책으로 인해 "갑"의 USER로부터 CLAIM이 발생한 경우.
- D.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하여 품질사고로 인정한 경우.

◆ Quality Problem

- A. In case of defect through Samsung inspection (In coming inspection, product inspection) due to Supplier material responsibility.
- B. In case of LINE-STOP in Samsung process due to Supplier material responsibility.
- C. In case of the claim of Samsung user due to Supplier material responsibility.
- D. When the quality problem is verified through the consultation between Samsung and Supplier.

제11조 납입품의 Incentive 및 Penalty

Article 11. Incentive and Penalty of supplies

1. "갑"은 "을"의 납입 품에 대한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별도의 기준에 준해 Incentive 및 Penalty 를 부여 할 수 있다.
- Incentive : 수입검사면제, Penalty 면제, 물량증가, 시상 및 장비지원 등
 - Penalty : 수입검사 등급 강화, 품질비용보상, 물량조정, 거래중지 등

2. "갑"과 "을"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책임규책 및 Penalty 적용 범위 등을 정한다.
 ("갑"의 "부품품질 손실비용보상 업무규칙"에 준함)
 3.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 1) 품질사고의 귀책 책임("갑" 및 "을")
 - 2) 손실비용의 보상한도(직접비용, 기회손실비용, CLAIM비용 등)
 - 3) 손실비용의 보상방법(현금입금, 납품대금공제, 자재무상공급 등)
 - 4) 재발방지 대책의 적합성 검토 등.
1. Samsung can pay give the incentive and penalty on Supplier supplies through the qualityevaluation conforming to the separate standard.
 - Incentive : exemption from the incoming inspection, exemption from penalty, productquantity increase, prize and machinery support, ect.
 - Penalty : Reinforcing AQL level of incoming inspection, Engineering Hold, Claim,Procurement order adjustment , No business, ect.
 2. Samsung and Supplier settl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nd penalty application throughmediation committee
 (Conforming to Samsung standard rule for parts quality loss costcompensation)
 3. mediation committee settles as below.
 - A. Responsibility for quality problem(Samsung and Supplier)
 - B. Compensation limit of loss cost (Direct cost, opportunity loss cost, CLAIM cost, ect)
 - C. Compensation method of Loss cost (Cash deposit, supplies payment deduction, materialgratuitous supply, ect)
 - D. Review the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on ofrecurrence

제12조 계약 불이행 시 조치

Article 12. Actions of contract non-execution

"갑"은 "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본 계약의 이행여부에 관해 점검하고 점검결과, 계약 불이행 사항을 발견 시 "갑"은 "을"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지적을 받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발주량 조정, 거래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Samsung audits if Supplier executes this contract regularly and frequently, Samsung urgeSupplier to execute the contract in case of non-execution. When the contract is not correctedor executed after 1month or Supplier is pointed out about same mistake, Samsung can applysanctions against Supplier such as the, Engineering hold, Procurement order adjustment, businessstop ect.

제13조 서비스 자재 공급 및 보상 기준

Article 13. Service Parts Supply & Compensation

1. 서비스 자재공급(Service Parts Supply)

"을"은 "갑"에게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법적의무 공급기간까지 서비스 자재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기간 공급에 따른 "을"의 손실비용이 많이 발생 할 경우 서비스 자재에 한해 "갑"에게 단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Supplier shall supply all the service parts required for repairing products till an obligationperiod as provided by the law stipulated by Korean Government.In the case of loss caused from supplying service parts for a long time, Supplier will beable to request a renewal of contract on the purchasing price.

2. 서비스 자재 손실보상 기준(Service Parts Supply & Compensation)

1) "갑"은 "을"이 서비스 자재 공급 지연 및 공급 불가에 따른 손실 발생시 "을"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이 공급한 자재 중에서 제품 보증 기간내에 불량을 유발 시킨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보상(RMA, 현금, 단가 인하 등) 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부가 정한 제품 무상보증 기간과 일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Supplier shall compensate the loss claimed by Samsung due to a delay of supplyservice parts, a no longer available status.

2) Supplier shall compensate the loss with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Cash, Reducing the price Caused from any defects of service parts supplied to Samsung underwarranty period agreed by mutual.The warranty of service parts shall be coincide with the one of complete productsstipulated by Korean Government.

부속서 1 손실비용 산출기준

APPENDIX 1. Reimbursement / Warranty

1. 수입검사 손실비용

1) 산출공식 : 불합격LOT수 × LOT당 검사소요 시간 × 분당 임금

2) 수입검사 손실비용은 "을"의 귀책으로 인한 수입검사 불합격 LOT의 재검사비용으로 불합격 발생 LOT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검사소요 시간은 각 LOT에 대해 수입검사를 하는데 소요된 순수 검사시간을 말하며 필요시 불합격 발생에 따른 공정 유실시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Loss cost for incoming inspection

A. Calculation formula : rejected lot q'ty × inspection time per Lot
× Wage/Minute

- B. The loss cost for incoming inspection shall be the screen cost for rejected lot occurred in incoming inspection process due to mistake of Supplier
- C. The inspection time means net inspection time per Lot in incoming inspection, if need it shall be included the loss time of the production line.

2. 공정품질 손실비용

- 1) 산출공식 : 유실시간 × 유실인원 × 분당임을
- 2) 공정품질 손실비용은 “을”의 귀책으로 인한 LINE STOP 및 재작업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손실비용으로 산출한다.

Loss cost for production quality

- A. Calculation formula: loss time × loss number of manpower × Wage/Minute
- B. the loss cost for production quality shall be calculated as loss cost in case line stop or rework occur due to mistake of Supplier.

3. 제품검사 손실비용

- 1) 산출공식 : 유실시간 × 유실인원 × 분당 임을
- 2) 제품검사 손실비용은 “을”의 귀책으로 인한 출하검사 불합격 LOT의 재작업 손실 비용으로 산출한다.

Loss cost for product inspection

- A. Calculation formula: loss time × loss number of manpower × Wage/Minute
- B. The loss cost for product inspection shall be calculated as loss cost for rework of rejected lot occurred in outgoing inspection due to mistake of Supplier.

4. 시장품질 손실비용.

- 1) 산출공식 : 고객Claim비용 + SERVICE처리비용 + 기회손실비용
- 2) 시장품질 손실비용은 업체의 부품불량으로 인해 국내, 외 시장에서 유행 성불량 및 Claim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서비스처리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해 실비로 산출한다.

Loss cost for market quality

- A. Calculation formula : Customer claim cost + Service handling cost + loss opportunity cost
- B. If the epidemic defect and claim occur in field due to supplier fault, the loss cost for service handling shall be calculated as actual

cost.

5. USER 공정불량 목표지수 미 달성시 손실비용 및 CLAIM처리 산출공식(부속서 2)을 참조하되, USER 공정불량 목표지수와 배상비율은 "갑"의 사업부와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loss cost for USER LRR Calculation formula: According to APPENDIX 2, About target of the LRR rates and compensation ratio of a loss cost, Samsung and Supplier determine

6. 수입검사, 생산공정, 출하검사 및 시장에서 발생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을"에서 무상수리 또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비용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을"에서 무상수리 또는 무상공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불량제품 단가를 손실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The relevant vendor should repair or supply the product for free in principle, if defective parts occurred in incoming inspection, production process, outgoing inspection and market. But, Supplier can't repair or supply product for free, the loss cost shall be calculated including the defective parts cost.

부속서 2 품질 목표 및 비용 배상 예

APPENDIX 2. Quality Goals and Cost Reimbursement Example

1. 제품군별 LRR목표(LRR Goal for each product)

Product	Q301	Q401	Q102	Q202

☞ 상기 LRR목표는 매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Samsung can set above LRR Target in every year.

2. 배상 %(Reimbursement Percentage)

LRR	배상 Percentage
목표치와 동일, 그 이하 Below or at Goal	0%
목표치 초과 25%까지 Up to 25% above Goal	0%
목표치 초과 50%까지 Up to 50% above Goal	50%
목표치 초과 50% 이상 More than 50% above Goal	100%

3. 평균 수리비용(Average Repair/Replacement cost)

제품 Produt	개당 평균수리비용 (Average repair or replacement cost/each product)	
	USD	WON(Standard)

상기 Table 이외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별도 협의 하에 적용한다.

The product that is not mentioned at above table is applied any criteria through mutual discussion.

부속서 3 배상 산출 예

APPENDIX 3. Reimbursement Example

Supplier Q2.2001 LRR Performance

Product	Units Shipped	Actual LRR		LRR Goal	
		Units(failed)	DPPM	Units(failed)	DPPM
SP/MOTOR (GENERAL)	900,000	87	97	90	100
SP/MOTOR (IC Type)	200,000	97	485	40	200

Reimbursement Calculation

Product

SP/MOTOR (GENERAL)	Unit failed	Reimbursement %	Reimbursement Amount
	below or at Goal :	87 0%	\$0
	max. 25% above Goal	0 0%	\$0
	max. 50% above Goal	0 50%	\$0
	more than 50% above Goal	0 100%	\$0

Product

SP/MOTOR Unit failed Reimbursement % Reimbursement Amount

(IC Type) below or at Goal :	40	0%	\$0
max. 25% above Goal	10	0%	\$ 0
max. 50% above Goal	10	50%	\$9.40
more than 50% above Goal	37	100%	\$69.56
			\$78.96

Total Reimbursement Amount for LRR in Q2/01 : \$78.96 (=₩102,885)